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76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6.

발 의 자 : 이종욱 · 안철수 · 서천호
김종양 · 이성권 · 권영세
김은혜 · 조승환 · 최은석
송언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공직선거법」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의 개최를 제한하고 있음. 또한 행사 참가자에게 음식물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지역의 대표 축제나 오랫동안 매년 개최되어 온 축제에도 똑같이 적용되면서 지역 상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. 실제로 지역축제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, 선거 시기와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선거와 관계없이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계속 개최되어 온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, 선거의 공정성은 지키면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문화·여가 활동에 불필요한 피

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6조제2항제4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의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행위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5. (생 략)

③ ~ ⑦ (생 략)

5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